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자 : 정병용 의원

발의일 : 2021. 7.

1. 제안이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 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까지 유발하기도 함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 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